**프리랜서 용역계약서**

**계약건명** :

**계약기간** :

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는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에게 용역업무를 의뢰 하면서 다음과 같이 `프리랜서 용역계약서`를 체결하고,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

**제1조(계약의 목적)**

본 계약은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계약의 범위)**

"을"은 "갑"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작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① 작업1

② 작업2

③ 위 작업에 대한 버그픽스 또는 유지보수작업

**제3조(계약기간 및 계약금액)**

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② 총 계약금액은 금 만원정으로 한다.

③ 대금지급은 계약체결후 1차작업완료일은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완료즉시 총 계약금액의 %, 작업완료 후 납품과 동시에 잔금 %를 지급하며, 지급방법은 “을”이 정한 은행 (계좌번호: )로 입금한다.

**제4조(납품)**

“을”은 작업 진행중 중간완료된 성과물을 년 월 일 , 년 월 일 등 회에 걸쳐 중간납품을 하기로 하며 최종 납품은 검토 및 수정 후 완성품(원본소스)으로 납품키로 한다.

**제5조 (지적재산권)**

① 본 계약상 “을”이 제작하여 대행하는 제작물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이 "갑"에게 납품하는 모든 제작물의 지적소유권은 원칙적으로 “갑”에게 있다.

**제6조(협조의무)**

“갑”은 “을”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, 작업수행을 위한 “을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비밀유지)**

“을”은 본 작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,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다.

**제8조(품질)**

본 계약에 의해 진행 완료된 성과물은 “갑”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, 만약 품질의 이상으로 활용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금액의 %만을 지급하기로 한다.

**제9조(계약의 해지)**
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당한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**제10조(해지의 효과)**

① 전조 제1항의 사유에 의거,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“갑”은 잔금의 10%인 금 만원정을 “을”에게 지급함으로써 “을”의 용역수행 대가에 갈음한다.

② 전조 제2항의 사유에 의거,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귀책사유가 “을”에게 있을 때에는 기 지급된 계약금(총 계약금액의 %) 외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나머지 용역수행의 대가를 지급 할 의무가 없다.

③ 전조 제2항의 사유에 의거,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귀책사유가 “갑”에게 있을 때에는 “갑”은 잔금(총 계약금액의 %) 중 %인 금 만원정을 용역수행의 대가로 “을”에게 지급한다.

**제11조(손해배상)**

“을”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손해배상액은 금 만원로 정한다.

**제12조(해석)**

본 계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.

**제13조(소송관할)**

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**계약일 : 년 월 일**

「**갑**」

회사명 :

주 소 :

대 표 : (인)

「**을**」

주민번호 :

연락처 :

주소 :

성 명 : (인)